당산동 2차 어울림 아파트(신형, 한독연립 재건축)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영등포구 주택과 - 22070호(2009.11.2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2번지 외 10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3층 2개동 125세대 중 아파트 일반공급 20세대(신형·한독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2세대, 3자녀 특별공급 1세대］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주택형별 평균가격임)

(단위 : ㎡, 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前 주택형표기 (전용+주거공용)	세대별 대지지분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금액		1회	2회	
															10%	20%	20%	50%
															계약시	09.12.27	10.01.27	입주지정일
민영 주택	22280-01	2009000815(01)	84.9651	22.7321	61.8721	84.6042	169.5693	107.6972	43.58	1층	3	183,600,000	224,400,000	408,000,000	40,800,000	81,600,000	81,600,000	204,000,000
	22280-02	2009000815(02)	84.8711	22.1311	61.7961	83.9272	168.7983	107.0022	43.30	1층	3	182,250,000	222,750,000	405,000,000	40,500,000	81,000,000	81,000,000	202,500,000
										2층	3	193,500,000	236,500,000	430,000,000	43,000,000	86,000,000	86,000,000	215,000,000
										3층	1	207,450,000	253,550,000	461,000,000	46,100,000	92,200,000	92,200,000	230,500,000
										4층~10층	10	211,950,000	259,050,000	471,000,000	47,100,000	94,200,000	94,200,000	235,500,000

*상기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슴.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른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3 의거)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공급 금액은 별도계약품목(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건물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되며,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특별공급 일정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동, 호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전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9. 12. 7(월)	견본주택 / 10:00 ~ 14:00	2009. 12. 7(월) / 당사 견본주택 / 18:00

-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	거주지별	84.8711	합계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수도권 거주자	2	2
3자녀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거주자	1	1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음.
*해당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1)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 전용 85㎡이하 공급규모 20세대의 10%이내로 총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분.(무주택세대주)

-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등의 기준은 입주모집공고일 현재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 12. 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 관할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인감등록증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1통 ※ 주민등록표 등, 초본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 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처리함.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특별공급(3자녀이상) : 일반공급 총 20세대의 3%이내로 총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 12. 1)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단,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 불가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물량의 3%를 특별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 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자녀수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됨.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 12. 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기간이 주민등록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 관할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인감등록증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1통 ※ 주민등록표 등, 초본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이상 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세대주 나이가 35이상 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 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3) 특별공급 공통 사항[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특별공급 추첨 순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 6, 7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산 2차 어울림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방문 신청 [서울시 당산동3가 396-2번지 연락처 : 02)2069-0970]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9. 12. 7(월요일) (10:00 ~ 14:00) / 당산 2차 어울림아파트 견본주택 [서울시 당산동3가 396-2번지 연락처 : 02)2069-0970]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12. 7(월요일) (18:00) / 당산 2차 어울림아파트 견본주택 [서울시 당산동3가 396-2번지 연락처 : 02)2069-0970]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내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12. 1)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g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단, 2009.4.1~2011.3.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기간 중이라도 민영주택 한하여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전용면적)	청약관련 입주자 저축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가점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포함〕에 속한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이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적용됨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전환됨	서 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2009.12.8(화요일)	접수장소 - KB국민은행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KB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www.apt2you.com 접수시간: 08:00 ~17:30	*일시: 2009.12.16(수요일) *장소: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서면통지는 하지않습니다 (전화문의는착오 가능성때문에 응답하지않으니 이점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1980. 8. 29 이전 KB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22이전 국민주택청약부금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1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전용면적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1위가 되신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참조)				
	2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별도가점제 신청자격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9.12.9(수요일)		
		85㎡이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별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분 *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				

			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85㎡이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9.12.10(목요일)	*접수장소: KB국민은행본/지점 *접수시간: 09:00~16:00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3순위 창구접수는 KB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접수가능(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전용면적 기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2007. 9 .1일 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함

구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가점제 입주자선정 방법: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감점점수가 전 체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0"점"으로 계산됨
*인터넷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정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	0	8년이상~ 9년미만	18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 세대시 배우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이상~ 10년미만	20	
		1년이상~ 2년미만	4	10년이상~ 11년미만	22	
		2년이상~ 3년미만	6	11년이상~ 12년미만	24	
		3년이상~ 4년미만	8	12년이상~ 13년미만	26	
		4년이상~ 5년미만	10	13년이상~ 14년미만	28	
		5년이상~ 6년미만	12	14년이상~ 15년미만	30	
		6년이상~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이상~ 9년미만	10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1년미만	2	9년이상~ 10년미만	11	
		1년이상~ 2년미만	3	10년이상~ 11년미만	12	
		2년이상~ 3년미만	4	11년이상~ 12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5	12년이상~ 13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6	13년이상~ 14년미만	15	
		5년이상~ 6년미만	7	14년이상~ 15년미만	16	
		6년이상~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의2 제3항, 제12조 제3항, 제5항, 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에 포함함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60㎡이하의 주택으로서주 택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소유한기간과 처분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2의 또는 제12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8.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 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세대원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적용 기준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소유주택: 2주택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 마다 5점씩 감점

(※ 만60세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주택: 2주택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청약신청접수방법

*입주자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무주택 세대주 : 해당 청약신청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일반공급

- 공통: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초과된주택형은 차순위 접수를 받지않고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1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KB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양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구분	KB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자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2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 *3순위: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KB국민은행 통장거래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 접속 ▶부동산 ▶청약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3순위 청약: KB국민은행 본/지점	

※청약자가 인터넷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은행창구 방문 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국민은행에 비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또는 서명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간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 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평형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400만원	창구 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비사항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9. 12. 16(수요일) 이후 (평일09:00 ~ 16:00) * 토, 일, 공휴일제외	청약접수한 KB국민은행 본/지점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서명(서명으로 신청한분에 한함)
		제 3자 대리 환불시	*상기환불시 구비서류외에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 는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는 제출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시 신고한 환불계좌에서 출금하여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명의 국민은행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분은 당첨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환급)됨〕

■ 입주자선정방법 및 동・호수결정

*아래와 같이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를 결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구분	선정 방법 및 동, 호수결정
특별공급	*2009.12. 7(월요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하에 동・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특별공급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일반공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가입 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청약자는 모두 해당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85㎡ 이하: 일반 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입주자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 할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 시 예비당첨자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물량 등을 공개한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 우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비당첨자명단은 당첨자발표시 당사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건축조합원에 기배정된동・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결정함

■ 인터넷 및 ARS 당첨자발표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등에서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KB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방법	KB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9. 12. 16(수요일) ~ 12. 23(수요일) (8일)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전화1588-9999 (서비스코드913)	전화1369(서1비스코드5#)
	이용기간	2009. 12. 16(수요일) ~ 12. 23(수요일) (8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9. 12. 16(수요일)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결될 수 있음

■ 계약체결안내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대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09. 12. 21(월) ~ 2009. 12.23(수) (3일간) (시간 : 10:00 ~ 16:30)	당사 견본주택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이후 미계약 세대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 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고 미 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용) 1통 *인감도장 *계약금 (수도권 소재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추가) 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사본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1통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자의 경우에 한함) ⑥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포함)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③ 소형·저가주택임을증명하는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등) 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구비사항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1통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비치) 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기재하여 제출하시기바람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기재한경우
② 1순위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③ 특별공급당첨자 중 과거 다른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판단시 당첨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3자녀 특별공급당첨자중 다음에 해당될경우 향후 특별공급자격박탈 및 일반청약자격이 제한됨
- 계약을 체결하지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후라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이 사실과 달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10일간의 소명기간안에 소명하지못할경우 (당첨취소와함께공급계약이취소됨
*지정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함
*주민등록번호위조 타인의주민등록증절취 청약관련서류변조 및 도용등 불법행위로 적발될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등을 타인명의로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등을 사실상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아파트배치구조 및 동호수별위치에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함
*도배,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사전점검운영요령"에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행정구역 및 단지내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한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등은) 준공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7조"에 준함

■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이하인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대해다음요건을충족하는분은민영주택또는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8.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잔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잔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잔금을 납부해야한다.(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 동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후 잔금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입주예정일 안내

*2010년 2월 27(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예정), 본 아파트는 2009년 10월 30일 영등포구청에서 준공인가를 필하였으며 입주 예정일 이전 입주 시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미적용됨.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입주예정자가 입주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함.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를 필한 아파트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0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필하였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아파트명	감리구분	업체명	감리금액(VAT별도)	비고
당산동 2차 어울림 아파트	건축	(주)이명이엔씨	353,511,355	
	소방	(주)남도티이씨	32,658,050	
	전기	(주)세호종합감리	42,221,270	
	통신	(주)이레이엠씨	3,50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 유의사항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3.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5.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7.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8.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9.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0.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1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3.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지역의 신축으로 인한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14.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15. 홍보물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 및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시어 최종 실 시공된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16. 본 사업은 같은 평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공급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7.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18. 발코니 외부 샷시 및 확장은 개별 시공으로 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함.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20.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21.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22.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전체단지를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음을 인지함.
23.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24.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5.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단지를 합한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구)분양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음.
26. 면적는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 소주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2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명
▣ 사업주체명 : 신형·한독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번호 : 254171-0013618)
▣ 시공업체명 : 금호산업주식회사(법인번호 : 110111-0134877)

■ 견본주택 안내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2번지 [☎ 02)2069-0970]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